

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 정 성 수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☐ 제출일자 : 2003년 9월 4일
- ☐ 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2. 위원회 회부

- ☐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 - ☐ 상정일자 : 2003년 9월 19일
- <제13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>

3. 개정사유

- 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에 이의설치 허가 근거규정 미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
- ☐ 서울시로부터 설치허가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요구가 있어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☐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에 “차양시설 및 비가리개”를 신설(안 제2조제3호)

5. 검토의견

- ☐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중에 제5항 제11호 에 의하면 “도로의 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·물건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”이 포함되어 있고 2002.5.20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골목형 재래시장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우리구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
- ☐ 현재 대부분의 재래시장에서는 천막 등으로 비가리개를 시설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설치허가를 내어줌으로서 소방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좌판 등을 정비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

- ☐ 다만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설치에 따른 공사비 확보 및 부담금 분담 문제, 점용료 징수 등 제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개정과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

6. 관계법령 발췌

☐ 도로법 제40조 제1항

○제40조(도로의 점용)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·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

○⑤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(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)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·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(개정 '93.8.14, '99.8.6)

11.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·물건(식물을 포함한다)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

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5조 제3항

○영 제15조 제5항 제12호 규정의 “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(개정 2002.5.20)

용 도	구조	면적	기 타
차양시설· 비가리개시설	제한 없음	제한 없음	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(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)에 설치 하는 것